

## □ 사업개요

### ☞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란 ?

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,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인력 (경기도 사업)

\* 유사사업 현황 : 서울시 안전어사대, 부산시 안전보건지킴이, 충남 산업안전지킴이,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지킴이 등

## 1 필요성
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3. 1월)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활동 필요
  - '22년 전국 산재 사망사고 876명 중 경기도는 256명으로 전국 최다(29.2%)
-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강화와 산재 사망사고 감축 필요

## 2 사업목적

-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·지도,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계도
- 떨어짐, 무너짐, 끼임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,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
- 도·시·군, 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

## 3 지원근거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(지자체 책무), 제4조의3(지자체 산재예방활동)
- 「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」 제9조(산재예방 사업)

## 4

### 추진경과

---

- ('20.3월) 건설안전 분야 경력자(산업안전기사 10명)를 선발, 2인 1조로 도내 5개 권역(10개시) 집중점검 활동 실시
- ('20.7월) 경기도 '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 표준(안)'에 '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출입 및 협조사항' 반영
- ('21년~) 31개 시·군으로 확대(104명 선발), 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

## 5

### 사업내용

---

- 사업기간 : 2024. 3. ~ 12. (약 9개월)
- 사업내용 : 노동안전지킴이 채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  
⇒ 건설현장 및 제조업(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)  
\* 용인·이천·광주(물류창고·센터), 양주·김포·평택(제조업) 등 지역별 특정 위험업종 점검
- 사업목표 : 현장점검 40,000회(건설업 60% 이내, 1팀당 1일 4-5건/월 86건/연 770건), 워크숍 3회, 합동 현장점검 2회(4월, 7월), 합동 홍보캠페인 3회

# □ 노동안전지킴이 활동

## 1 활동근거

### ○ 「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」 제6조(사업주의 협조)

제6조(사업주의 협조)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4.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

### 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 2(지자체 책무), 제4조의3(지자체 산재예방 활동 등)

[본조신설 2021. 5. 18.] [시행일 : 2021. 11. 19.]

####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# 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, 제6조(근로자의 의무)

####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.
  1. 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
  2.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
  3.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
- ② 발주·설계·제조·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하고, 발주·설계·제조·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(근로자의 의무)

근로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

[본조신설 2021. 5. 18.] [시행일 : 2021. 11. 19.]

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

①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건설공사 계획단계: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
2. 건설공사 설계단계: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,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·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할 것
3. 건설공사 시공단계: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,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

②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.

③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·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·설정하여야 한다.

④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○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「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」 마련(20.7.30)

1. 일반사항

3. 건축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점검(수시, 불시 포함)시 점검자(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포함)의 현장출입, 관련자료 제공, 현장 안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○ 시·군 관내 산업단지 등 사업장(공장) 방문 시 협조 공문 발송(20.12.4)

**제목 : 신규사업장(공장) 및 산업단지 산업재해 예방 안내 등 협조 요청**

내용 : 경기도 산업정책과-6285(20.6.22.)호와 관련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 밀집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 요청

- ‘노동안전지킴이’ 관내 산업단지 등 사업장(공장) 방문 시 협조

○ 관내 현장방문 시 협조 공문 발송(21.4.6)

**제목 : 경기도 「노동안전지킴이」 안전점검 활동 협조 요청**

내용 : 경기도는 건설 및 제조업 현장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‘노동안전지킴이’ 운영 사업을 추진 중임. 노동안전지킴이 출입 및 안전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 요청

○ 시·군 인허가 부서의 민간건설공사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(21.5.3)

**제목 :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·군 관련부서 적극협조 조치요청**

내용 : 시·군 종합평가 도정주요시책지표에 따른 진행 중인 민간건설공사 현황파악을 위해 인·허가 부서의 절대적 협조가 요구됨

평가에 따른 증빙자료는 인허가 부서에서 지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 요청

## 2

## 활동내용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<p>현장점검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장 현황조사 및 활동계획서 작성(주간, 월간)</li> <li>◦ 현장점검 시 준수사항 준수(보호구 착용, 신분증 제시 등)<br/>※ 반드시 점검자 본인의 안전 확보 후 사업장 점검 실시</li> <li>◦ 안전조치 사항 현장점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초 점검 후 안전조치 미비 현장에 대해 n차 반복점검</li> </ul> </li> <li>◦ 도의 합동점검, 산업재해 발생 등 요청 시 현장점검 실시</li> </ul> |
| <p>개선조치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현장점검 후 현장점검표 작성</li> <li>◦ 현장관계자에게 설명 및 안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취지와 점검결과(위험요인, 개선방안)을 설명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</li> <li>- 사전에 준비한 안전기술자료(포스터, 스티커 등) 배부</li> </ul> </li> <li>◦ 불량현장 유관기관(안전보건공단, 노동지청)으로 연계</li> <li>◦ 현장점검 이력관리 스티커 부착</li> </ul>       |
| <p>결과보고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점검표, 점검실적 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(매일)</li> </ul>   |
| <p>사후관리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개선조치 사항 모니터링</li> </ul>   |

## 3

## 점검 대상

- 중점 점검대상은 건설업, 제조업 및 물류시설 운영업으로 함
  - 건설업 : 60억 미만 민간공사 (산안법 시행령 “별표3”에 따라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)  
\* (참고)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: 공사금액 60억~80억미만(’22.7월~), 50억~60억미만(’23.7월~)
  - 제조·물류시설 등 :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지역별 밀집산업\* 등에 따라 선정  
\* 예시 : 용인·이천·광주(물류시설), 양주·김포(외국인고용 소규모제조업)
-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, 중점 점검대상을 우선으로 하되, 중점 점검대상(중규모 이상, 배부된 건설현장 목록 외 현장 등)에 해당하지 않은 안전불량 현장도 점검 가능 \* 안전관리자 선임기준(산안법 시행령 “별표3”참고)

- 현장점검 4~5개소/일 이상 (이행여부 점검포함)
  - 안전조치 미흡 현장에 대해 개선조치 사항 사후 모니터링
- 유관기관에서 협조공문 발송 등으로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
-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(시군 → 도) 및 모니터링
  - 1) 사고개요 등 상황 파악(사진 첨부) 2) 과거 점검이력 등 확인 후 보고
  - 3) 현장수습 상황 모니터링 4) 위험작업장으로 분류, 사후 모니터링(현장점검) 실시

변화의 중심, 기획의 경기



경 기 도

수신 관내 사업소장(관리자)

(경유)

제목 '23년 「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」 안전점검 활동 협조요청

1. 평소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2. 경기도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, 제조업, 폐기물재활용업, 재활용수거업, 광공업, 서비스업, 산업단지, 공단, 소공인집적지구 등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'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' 운영 사업을 '21년부터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, 귀 사업 현장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안전점검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계도와 지도로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현장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함이니 안전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>

제6조(사업주의 협조)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지원을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-3. 생략

4.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

5. 그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

끝.

경 기 도



자 사 인

주무관 김영철      산업재해예방      중대산업재해 대책 2023. 3. 27.      노동안전과장      전결  
 팀장      김승희      대응팀장      황종일

협조자

시행 노동안전과-2753      (2023. 3. 27.)      접수

우 11780      경기도 의정부시 창사로 1 (신곡동)      / <http://www.gg.go.kr/>

전화번호 031-8030-4553      팩스번호 031-8008-8499      / [yckima@gg.go.kr](mailto:yckima@gg.go.kr)      / 대국민 공개

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